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063호
2.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
3. 발의일자 : 2022. 1. 21.
4. 회부일자 : 2022. 1. 25.

## II . 제안이유

-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학교급식시설의 정비 및 학교급식 과정에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환기시설 등 설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III .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장 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입법예고(2022.1.27. ~ 2.8.)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최기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063호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업무상 재해로 다수 인정됨에 따라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급식 시설 내 환기 시설 등의 구축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sup>1)</su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중요시되면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영양뿐만 아니라 종사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조리 중에 발생하는 조리 흡(Cooking fumes)에의 장기간 노출이 학교 조리종사자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실 내 환기 시설 개선이나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조리 흡은 튀김과 볶음, 조림 등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동반한

1) 202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과거에 근무이력이 있던 사람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종사자 31명이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이 중 13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음. 불승인된 사례는 1명이고 13명은 심사 중임(산재 신청일 기준, '18년 2명, '19년 2명, '20년 2명, '21년 25명).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8.),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 학교 대상 점검 실시”)

가열작업 시 에어로졸 형태로 변한 미세한 기름 입자가 휘발성 발암 물질과 만나 생성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 흡을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sup>2)</sup>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 내 환기 시설에 대한 걱정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 당국이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을 건강상 위해요소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국립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이수를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부 장관이 고발되는<sup>3)</sup> 등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시정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도 이러한 요구와 상황을 인식하고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sup>4)</sup> 진행하여 기준 수립에 나선 바 있으며,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근무연수가 10년을 넘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폐암 건강검진을 하도록 지도하는<sup>5)</sup> 등의 다양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급식실 내 환기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을 폐암 등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 면에서

2) WHO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10), 「Household Use of Solid Fuels and High-temperature Frying」,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95.

3) 민주노동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보도자료(2022.1.2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4) 학교 급식실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표준환기 방안 마련 연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행기관 : 주식회사 벤텍, 연구기간 : 2021년 4월~11월)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8.),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 학교 대상 점검 실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5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과정에 있어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sup>6)</sup>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교직원 안전 확보라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학교급식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했을 때 조문의 내용과 대상의 범위 등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조례가 「학교급식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그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급식과 관계된 교직원의 안전 확보까지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동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안 제11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리장 내 환기 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조리장 내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한 「학교급식법」이나 학교 시설에서 적정 환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

6)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조리 흡에 의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폐암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  
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  
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내 환기시설 등의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환기 수준과 이에 따른 시설 기준 부재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가능성 역시 제기되는 만큼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설치  
등의 적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계 부처에서 적정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고려하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02, 2022.1.28.).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19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1. 1. 30.] [대통령령 제31421호, 2021. 1. 29., 일부개정]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기계·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垓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 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삭제